

법무부 공증사무지침의 내용 및 공증신뢰 회복을 위한 향후과제

박혁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전 법무부 법무과 검사)

I. 서론

법무부는 공증의 예방사법기능을 강화하고 그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3년 공증인법 및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을 일부 개정하고, 공증사무지침을 제정·시행하였다. 2013. 11. 28.부터 시행된 개정법 및 시행령이 건물이나 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동산의 인도·반환을 구하는 경우도 집행증서의 대상 범위에 추가하고, 허위선서에 대한 과태료 제재 도입을 통해 선서인증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공증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면, 공증사무지침은 공증 분야에 만연되어 있는 집단공증의 폐해를 근절하고, 공증 감사·징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증사무지침 시행 등 법무부의 제도개선 노력은 공증 신뢰 회복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우선 이 지침의 시행 경과, 주요 쟁점 등을 살펴보고, 향후 공증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향후과제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¹⁾

1) 이 글은 필자가 ‘법조(法曹)’에 기고한 실무연구 논문 “공증제도개선의 최근 동향과 향후과제” 중 일부를 요약, 편집한 것이다. 아울러 이 글의 견해는 법무부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미리 밝혀둔다.

II. 법무부 공증사무지침의 내용

1. 공증수수료 할인 금지 지침(2013. 6. 1.)

가. 시행배경

공증사무는 국가사무이고, 임명공증인과 공증담당변호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지방 검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간주된다(법 제2조, 제10조, 제15조의5). 따라서 공증담당변호사가 허위로 공증서류를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되고,²⁾ 직무상 위법행위로 촉탁인 등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대한민국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³⁾ 이러한 공증사무의 본질상 공증인은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보관료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보수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법 제7조 제4항), 임의로 감액할 수도 없다(공증인수수료규칙 제30조, 이하 ‘수수료규칙’이라고만 한다). 그러나 2013년 상반기까지 우리 공증실무에는 수수료 할인 관행이 널리 퍼져있었다. 특히 집단공증사건을 처리하는 공증사무소에서는 공증사건 유치를 위해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것이 당연시되어 왔고, 법무부도 2013년 상반기까지 수수료 할인으로 징계한 사례가 전혀 없었다. 이러한 수수료 불법할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법무부는 2013. 1. ~ 3. 실적 상위 30개 사무소를 상대로 집중점검을 실시하였는데, 그 중 19개 사무소가 최대 70%까지 수수료를 할인해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지침의 주요 내용

법무부는 2013. 5. 수수료 할인을 중지하고, 수수료를 적법하게 영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하며, 공증감사시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전국 공증사무소에 지시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공증사무소가 수수료 할인을 관행처럼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기존 수수료 할인은 징계 없이 주의촉구로 종결하고, 2013. 6. 1. 이후

2)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의 공증담당변호사가 허위로 공증서류를 작성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3844 판결 등 참조

3) 서울고등법원 1975. 7. 11. 선고 75나425 판결 등 참조

이루어지는 수수료 할인에 대해서는 강화된 징계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수료할인 금지지침을 2013. 6. 1.부터 시행하였다. 위 지침에 따라 실제로 2013. 6. 중순부터 2개월 동안 특별감사가 실시되었고, 수수료 할인 등으로 적발된 공증사무소 7곳이 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 수시 특별감사의 기준(2013. 9. 1.)

가. 시행배경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을 감독하는 기관으로서(법 제78조), 소속 직원에게 공증인이 보존·보관하는 서류 등을 검열하게 할 수 있다(법 제80조). ‘서류 등 검열’ 즉, 공증인에 대한 법무부 감사는 연초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통상감사와 비위체보 등에 따라 수시로 실시되는 특별감사로 나뉜다. 통상감사는 법무부 공증감사팀에 의해 전국 공증사무소를 대상으로 2~3년을 주기로 실시되고 있는 반면, 특별감사는 주기의 제한 없이 그 사유가 인정되면 수시로 실시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최근 10년 동안의 통상감사 횟수]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전체사무소	302	319	341	379	393	404	397	379	364	358
통상감사	190	203	201	187	206	188	204	194	198	120
비율(%)	63	61	59	49	52	47	51	51	54	34

통상감사와 달리 수시로 실시되는 특별감사는 해마다 그 횟수에 증감이 있다. 2009년과 2011년에는 특별감사가 없었고, 2010년에는 5회, 2012년에는 8회, 2013년에는 24회의 특별감사가 실시되었다. 특히 2013. 7. ~ 9. 법무부는 집단공증에 따른 수수료 할인, 비대면공증, 말미용지 비치 등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시 특별감사를 대폭 강화하여 적발된 공증사무소 11곳 중 10곳에 대해 정직 1월 ~ 1년의 중징계 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이 특별감사는 비위체보 등에 따라 수시로 실시되므로 대상 선정 및 시기와 관련하여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그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여 공표할 필요가 있었다.

나. 지침의 주요 내용

2013. 9. 1.부터 공개, 시행된 법무부 ‘수시 특별감사의 기준’은 특별감사 대상의 선정기준을 정하여 공증인 감사·징계 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기준에 따르면 수시 특별감사는 ① 공증실적이 해당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인법상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 ② 신빙성 있는 제보가 접수되는 경우, ③ 민원, 이의신청 등 이해관계자의 문제제기가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고 그 혐의가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공증사무소에 대해 실시한다(제2조). 공증실적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것을 특별감사의 첫 번째 사유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집단공증의 폐해에 관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결과이다.

3. 징계 전 인가취소신청 등에 대한 처리기준(2013. 9. 1.)

가. 시행배경

종래 공증인이 아니면 징계를 할 수 없는 것을 기화로(법 제83조 이하) 징계 직전에 면직·인가취소 신청, 지정철회 신고를 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 법무부장관이 이러한 면직 신청 등을 수리하여 결과적으로 혐의자로 하여금 징계를 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면직·인가취소 신청 등에 대한 면직·인가취소 여부는 법무부장관의 재량이므로(법 제14조 제1항 제1호, 제15조의7 제1호) 결국 이 문제는 재량권 행사에 관한 적절한 기준이 무엇인지로 귀결되었다.

나. 지침의 주요 내용

2010. 1. 1.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공증감사에 적발된 후 징계를 면할 목적으로 면직 신청을 한 임명공증인이 1명, 공증인가를 취소한 인가공증인이 5곳, 공증인가는 유지한 채 지정철회만 신고한 공증담당변호사가 1명 있었는데, 지침 시행 이전부터 법무부는 면직신청 등을 한 공증인에게 징계 면탈의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면직신청 등을 수리하고 징계에 회부하지 않았다. 공증사무 중단이라는 불이익이 과태료나 정직

등의 징계보다 사실상 더 중하다는 점을 감안한 결과이다. 다만, 적발된 인가공증인이 인가취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그 공증담당변호사만 지정철회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증업무중단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공증담당변호사를 징계한 후 그 지정철회 신고를 수리하였다.⁴⁾

지침 제정 과정에서 법무부의 이러한 실무 관행은 징계 혐의자를 즉시 공증업계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징계전력이 남지 않는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었다. 그리하여 면직 신청 등을 수리하지 아니하고 징계 후 수리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이 방안은 과중한 조치라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고, 중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면직신청을 수리하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와도 맞지 않다는 점⁵⁾이 문제점으로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지침은 정직 이하의 징계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면직 신청 등을 수리할 수 있도록 하되, 인가공증인이 인가취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그 공증담당변호사만 지정철회(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징계 후 수리하도록 했다(제2조). 다만, 징계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징계혐의에 대한 증거자료를 보존하여 재임명, 재인가 등에 참고하도록 함으로써⁶⁾ 징계전력이 남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였다.

4. 징계전력자의 공증인 임명 등 제한 기준(2013. 10. 1.)

가. 시행배경

4) 공증담당변호사 변경(지정철회)신고의 법적성질이 문제되는데, 법무부의 현(現) 실무는 그 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고 있다. 변경신고를 수리(접수)가 불필요한 ‘자기완결적 신고’로 보게 되면 법무부장관의 수리 여부를 불문하고 그 신고는 유효하여 공증담당변호사 자격이 상실되므로 공증인 징계가 불가능하다.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별기준에 관해 다수설은 신고요건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원칙상 신고요건이 형식적 요건만인 경우에는 자기완결적 신고이고, 형식적 요건 이외에 실질적 요건도 포함하는 경우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고 있고[박균성, 행정법강의(제3판), 박영사(2006. 1.), 124쪽], 대법원 판례도 신고요건 및 심사정도(형식적 심사 또는 실질적 심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4537 판결 등). 이러한 다수설·판례에 의하면, 공증담당변호사 지정 및 지정철회 신고는 임명공증인 임명 신청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증인법의 입법목적,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실질적 심사 및 수리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법 제1조의2, 제15조의4, 제15조의5, 제15조의7, 시행령 제1조의3 등 참조).

5)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조 참조.

6) 후술하는 ‘징계전력자의 공증인 임명 등 제한 기준’ 참조.

(1) 공증인법상 임명, 재임명, 인가, 재인가의 기준

법은 임명공증인의 임명 기준에 관하여 자격요건(제12조)과 결격사유(제13조)만 규정하면서 그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임명권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고(제11조),⁷⁾ 임명공증인의 재임명 기준과 관련하여 결격 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제15조 제2항), 인가공증인의 인가 기준과 관련하여 임명공증인의 임명 기준을 충족하는 2명 이상의 공증담당 변호사를 지정하도록 하고(제15조의3) 이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인가를 취소하도록 했다(제15조의7 제1항 제2호). 그리고 법은 인가공증인의 재인가 기준과 관련하여 재인가 결격 사유를 명시하고 있고(제15조의8 제2항),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신고에 관하여 임명공증인의 임명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며(제15조의4),⁸⁾ 시행령은 공증담당변호사 지정신고서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신체검사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조의3).

(2) 징계전력자에 대한 재임명 등의 문제

2009. 1. 1.부터 2013. 7. 31.까지 사이에 새로 임명된 임명공증인 28명 중 징계전력자는 1명이고,⁹⁾ 공증 징계전력으로 임명이 거부된 경우가 1명 있었다.¹⁰⁾ 같은 기간 동안 재임명된 공증인 22명 중 9명은 징계전력자였으며, 그 중 2명은 2회의 징계전력이 있었다.¹¹⁾ 이와 같이 종래 실무관행은 징계전력이 있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임명·재임명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그 당시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처분이었다고 추정은 되나, 징계 실효성 또는 공증신뢰 회복 측면에서 징계전력자의 재임명 등은 재고될 필요가 있었다.

7)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이력서, 경력증명서, 신체검사서 등을 제출받아 임명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불 이유가 없으므로 실무상 인품, 능력, 청렴성, 건강 등을 고려하여 임명하고 있다.

8) 따라서, 능력, 청렴성, 건강, 징계전력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경우에만 지정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실무도 이와 동일하다.

9) 2010년 공증담당변호사로서 과태료 2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2011년 임명공증인으로 임명되었다.

10) 2010년 공증담당변호사로서 공증감사에 적발되자 법무법인 탈퇴신고를 하고 공증인 임명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같은 해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처분을 하고 임명을 거부하였다.

나. 지침의 주요 내용

지침에 의하면, 임명공증인·인가공증인·공증담당변호사의 신분상실 직전 5년 동안 과태료 2회 또는 정직 이상 징계처분을 받고 그 상실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고, 적절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임명·재인가·지정신고수리가 제한된다(제2조, 제3조, 제4조). 또한 임기·인가유효기간 만료 직전 5년 동안 위와 동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임명·재인가가 제한된다(제5조, 제6조).

과태료 2회, 정직 이상의 징계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재임명 등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며 징계전력에도 불구하고 공증인으로서의 적절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임명 등이 가능하다. 예컨대, 장부정리 미비 등 경미한 절차 위반으로 소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공증사무의 적절한 수행이 곤란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5년 동안의 징계전력만 고려하도록 한 이유는 법률상 결격사유(법 제13조)도 일정 기간이 경과되기 전의 것만 고려하고 있는 점과 정기감사가 2년에 1회 실시되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분상실 후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임명 등이 가능하도록 한 이유는 재임명·재인가 거부로 신분을 상실하거나 또는 재임명·재인가 거부를 예상하고 스스로 인가취소, 면직을 신청하여 신분을 상실한 직후 곧바로 다시 임명, 인가 신청을 하거나 지정신고를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해임의 경우에도 3년이 경과하면 법률상 결격사유에서 제외되는 점(법 제13조 제8호)을 감안하여, 신분상실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에는 임명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지침 시행으로 징계전력자 중 상당수가 재임명, 재인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
- 11) 인가공증인제도, 공증인 정원제가 도입된 2010. 2. 7. 이후 정원 초과로 새로 인가된 법무법인이 없고, 인가 유효기간 5년이 2015. 2. 6. 최초 도래하는 까닭에 지금까지 재인가 사례 자체가 없었다. 따라서 징계전력으로 재인가를 거부한 사례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공증 징계전력자가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신고하여 수리된 사례도 지금까지는 없다. 다만, 2012년 감사에 적발된 법무법인 공증담당변호사가 징계前 공증인가취소로 징계를 면하자 법무법인을 탈퇴한 후 2013년 다른 공증합동법률사무소에 가입하고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된 사례는 있다. 이 사례는 2013. 10. 1. 공증사무지침 시행 전(前)의 것이다.

[징계전력자 현황 (2013. 12. 31. 기준)]

구 분	인가공증인	공증담당변호사	임명공증인
정직 이상	9	10	6
과태료 3회	2	-	-
과태료 2회	26	17	5
과태료 1회	126	238	5

5.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

가. 시행배경

(1) 번역문 인증제도 활용 현황

번역문 인증은 번역문이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한 것임을 공증인이 증명해 주는 것이다. 증명의 구체적인 방법은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인데,¹²⁾ 우리 법에 따르면 번역인이 공증인 앞에서 서약하면서 사서증서인 서약서에 서명날인을 하고, 공증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인증문에 적는 방식으로 인증을 부여한다고 규정하여(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 이하 ‘서식규칙’이라고만 한다). 사서증서 인증의 유형 중 하나로 취급하고 있다.¹³⁾

2012년 인증 실적(법인의사록 인증 제외) 상위 50개 공증사무소의 사서증서 인증 실적은 21만 5,000건인데 그 중 번역문 인증은 4만 8,000건으로 23%를 차지하였다.¹⁴⁾ 2012년 전체 365개 공증사무소의 사서증서 인증 실적이 총 86만 건이므로 이 수치에 위 23%를 적용하면 전체 공증사무소의 2012년 전체 번역문 인증 건수는 대략 20만 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12) 남상우, “번역문인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3년 법무부 연구용역과제보고서, 7쪽.

13) 남상우, 앞의 보고서, 8쪽; 번역문 인증의 법적성격에 관한 상세는 이 보고서 28~34쪽 참조.

14) 공증사무소는 사서증서 인증 중 번역문 인증 비율을 법무부에 별도로 보고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무부 법무과에서 상위 50개소 사무소를 상대로 직접 건수를 확인하였다.

(2) 번역문 인증 실무의 문제점

(가) 번역인 아닌 사람의 촉탁·서약

현(現) 규정에 따르면 실제 번역인이 번역문 인증을 촉탁·서약하는 것이 원칙이다(서식규칙 제33조).¹⁵⁾ 이는 서약의 본질상 당연한데도 종래 실무는 번역과 무관한 유학원, 여행사 등의 직원 또는 택배기사가 번역문 인증을 촉탁·서약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대사관이 밀집한 서울 종로구·중구 소재 일부 공증사무소는 다수 번역문 인증을 집단촉탁받아 처리하면서 수수료 할인, 비대면 공증 등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집단촉탁에 의한 번역문 인증은 1인이 수십~수백 건을 일괄 촉탁하므로 기한 내(內) 인증을 완료하려면 위법행위가 불가피하다. 1건의 번역문 인증마다 서약인을 대면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의미도 없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이미 공증인의 서명이 되어 있는 말미용지를 이용하거나 심지어 서약인의 서명날인을 보조자가 대행하는 경우도 있다.¹⁶⁾

(나) 번역인의 번역능력에 대한 확인 절차 형해화

번역인의 서약은 해당 외국어에 대한 번역능력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종래 실무는 번역능력이 없는 사람이 작성한 번역문도 번역능력 확인 없이 인증을 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법무부 설문조사(2013. 5.)에서 대다수 공증인들은 번역문 인증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번역자력에 제한이 없는 것을 지적하였다.

(다) 자격 없는 자의 행정기관 제출 서류 번역

일반 행정사 아닌 사람이 업으로 행정기관 상대의 신청 행위를 대리하거나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업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번역하면 행정사법위반

15) 따라서 번역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임의대리인에 의한 번역문 인증 촉탁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와 달리 대리인에 의한 촉탁이 가능하다는 견해로 신정식, 공증인법개설, 삼화문화사(2012. 9.), 429쪽이 있으나 서약의 본질 및 실무 관행에 비추어 의문이다.

16) 집단공증에 의한 번역문 인증의 폐해에 대해서는 남상우, 앞의 보고서, 62~65쪽 참조; 참고로, 2013년 상반기 동안 31,000여 건의 번역문을 인증한 공증사무소도 있다. 매일 평균 258건이고, 1일 근무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2분마다 1건씩 번역문 인증을 한 셈이다. 이 공증사무소는 특별감사에서 비대면공증, 수수료 할인 등으로 적발되어 정직 7월 및 9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다(제3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1호). 그러나 실무상 무자격자들이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 제출 서류 또는 영사확인·아포스티유 발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번역하여 공증인의 인증까지 받아주고, 나아가 위 발급 신청까지 대행해주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는 실정이다.¹⁷⁾

(라) 서식·수수료의 문제

현(現) 서식규칙 제33조는 영문번역문 인증서식만 규정하고 있고, 수수료규칙은 번역문 인증 수수료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무상 혼선이 있었다. 종래 대다수 공증사무소에서는 다른 번역문 인증의 경우에도 영문번역문 인증서식을 사용하였고, 수수료규칙 제15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3항, 제26조를 적용하여 건당 25,000원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반면에 영문번역문 서식이 아닌 별도 서식을 만들어 사용하고, 국문 번역문을 인증하는 때에는 수수료규칙 제20조 제1항에 따라 외국어 번역문 수수료의 반액인 12,500원을 수수하는 일부 공증사무소도 있었다.

나. 지침의 주요 내용

(1) 개요

번역문인증사무 지침은 번역문 인증 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2013. 10. 1.부터 시행되었다(제1조). 이 지침에 따르면 영문 이외의 번역문에 대해서도 영문번역 인증서식에 의하고(제3조), 외국어 번역문과 국문 번역문의 구별 없이 모든 인증 수수료를 25,000원으로 통일하였다(제7조). 그밖에 공증인은 공증촉탁서의 촉탁인관에 서약일시 및 소요시간 등을 기재해야 하고(제6조 제1항), 번역문 집단인증 현황도 보고해야 한다(제9조).

17) 다만, 서울에 사무실을 둔 외국어번역행정사가 2013. 10. 현재 40여 명에 불과하여 외국어번역행정사 아닌 사람의 번역행위를 행정사법위반으로 형사처벌하거나 전면 금지할지 여부는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 참고로, 2013년 행정사시험에서 24명의 외국어번역행정사가 새로 배출되었다.

(2) 번역문 인증 촉탁·서약

이 지침에 따르면 촉탁·서약은 번역인이나 또는 번역의뢰인(법정대리인 포함)만 가능한데, 후자의 경우에는 번역인의 확약서, 번역능력 증명자료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제4조). 서식규칙 제33조 제2항에 의하면 번역인이 아닌 사람도 제한 없이 서약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나 서약의 본질상 번역과 무관한 사람이 서약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므로 번역인이 아닌 사람 중 번역의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만 서약할 수 있도록 했다.

(3) 번역자의 번역능력 확인

이 지침에 따르면 공증인은 번역인이 해당 번역문에 대하여 번역능력이 있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제5조 제1항). 번역능력 판단의 최종 책임자는 공증인인데, 지침은 공증인의 판단이 용이하도록 번역능력이 있는 경우를 예시하였다(같은 조 제2항 제1호~제7호). 제7호에 따르면 제1호~제6호에 준하는 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춘 경우 공증인의 책임 하에 번역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¹⁸⁾¹⁹⁾

6. 집행증서 작성사무 지침(2013. 10. 1.)

가. 시행배경

(1) 집행증서의 활용현황

2012년 상위 50개 공증사무소가 작성한 공정증서는 약 27만 8,000건이고 그 중 집행

18) 번역능력 판단의 상세기준은 법무부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 해설(1차 2013. 10. 1., 2차 2013. 10. 17.)’ 참조. 이 해설자료는 법무부 전자공증시스템(<http://enotary.moj.go.kr>)에 공지되어 있다.

19) 번역능력 확인절차를 강화하면서 소수민족 언어의 번역문에 대한 번역능력자를 확보하는 것이 실무의 큰 과제로 남았다. 이와 관련하여 남상우, 앞의 보고서, 55쪽 참조; 아울러 이 보고서 74쪽은 번역문 인증시 번역인의 선서를 2010. 2. 7. 공증인법 개정으로 도입된 선서인증 방식에 의할 것을 제안하였다.

증서는 약 27만 3,000건(98%)이다. 그 중 약속어음 집행증서가 65%, 금전소비대차계약 집행증서가 27%, 채무변제계약 집행증서가 6%이다.²⁰⁾ 2010년 실제 강제집행에 나아간 집행권원은 약 16만 8,000건인데, 그 중 집행증서는 약 1만 9,000건(11.3%)이고, 나머지 88.7%는 법원 판결과 조서였다.²¹⁾

(2) 대부업자 등의 집행증서 집단대리촉탁 현황

대부업자, 저축은행 등이 다수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그 직원이나 브로커를 채권자·채무자의 쌍방대리인으로 내세워 매일 수십~수백 건을 일괄 대리촉탁하고, 채무자의 집행수락의사표시도 대리하는 것이 종래 실무의 관행이다. 2012년 상위 60개 사무소는 매일 평균 최저 10건에서 최다 260건²²⁾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매일 260건의 실적은 대부업자 등의 집단촉탁 없이 일반 개인의 촉탁만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한 수치이다.

(3) 대부업자 등의 집행증서 집단대리촉탁의 문제점

집단공증으로 인해 공증인별 실적에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2012년 전국 365개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한 공정증서는 약 70만 건인데, 그 중 27만 건(40%)을 상위 20개 공증사무소가 처리하였다. 상위 20개 사무소의 1년 건수는 13,500건으로 전국 사무소 평균 1920건의 7배에 달했다. 집단공증에 따른 비위혐의도 가볍지 않다. 대부업자 등의 직원 또는 대출브로커가 동시에 수십~수백 건을 일괄촉탁하므로 기한 내(內) 작성을 완료하기 위해 공증인법 위반이 불가피하다. 집행증서마다 촉탁대리인을 대면할 수도

20) 공증사무소는 공정증서 중 집행증서가 차지하는 비율을 별도로 보고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무부가 상위 50개소 사무소를 상대로 직접 건수를 확인하였다.

21) 장재형·전병서, “집행증서 대상의 범위 확대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2011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 보고서(2011. 6.), 44쪽.

22) 참고로 법무부의 ‘전자공증 관련 일본법무성 및 일본공증인연합회 방문결과’ 보고서(2013. 6.) 10쪽에 따르면, 일본 동경에 있는 가즈미카세키 공증사무소(공증인 4명)에서 2012년 작성한 공증 서류는 총 11,278건(공정증서 994건, 정관인증 300건, 일반사서증서 인증 9,984건)이었다. 공증인 4명이 매일 11.7건(11,278건÷12월÷20일)을 처리한 셈이다. 이 보고서는 2013. 7. 2.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btis.mospa.go.kr>)에 게시번호 141336번으로 등록되어 있다.

없고 대면하는 것이 의미도 없다. 공증인이 부재중인 때에도 미리 서명이 된 말미용지를 이용하고, 촉탁대리인의 서명을 보조자가 대행하는 경우도 있으며, 공증서류를 택배로 주고받는 경우도 있다. 법무부는 2013. 7. ~ 9. 집단공증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는데, 11개 공증사무소가 비대면공증, 말미용지 비치 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²³⁾

한편, 집행증서 작성시 법률행위는 물론이고 채무자의 강제집행수락 의사표시도 명확히 확인되어야 한다. 특히 1인이 쌍방을 대리하거나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집단공증의 경우에는 채무자 의사 확인 절차가 형해화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대부업자 등은 채무자로부터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위임장, 계약서 등에 날인하고, 그 과정에서 채무자는 계약서, 위임장의 내용은 물론 집행증서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증촉탁 위임장에 쌍방대리·자기계약을 허락한다는 취지 및 집행수락의사가 기재되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더라도 채무자의 진정한 의사가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지침의 주요 내용

(1) 개요

지침은 집행증서 작성사무의 적절성·공정성을 확보하고, 집행채무자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3. 10. 1.부터 시행되었다(제1조). 공증인은 공증촉탁서에 촉탁인 및 촉탁대리인을 면담한 일시, 소요시간 등을 기재해야 하고(제7조), 집단공증 현황도 매월 보고해야 한다(제8조). 이 지침에서 ‘대부업자 등’이라 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23) ① 임명공증인 A는 비대면 653건, 수수료할인 5,778건으로 정직 9월, ② 임명공증인 B는 비대면 440건, 수수료할인 5,778건으로 정직 7월, ③ 인가공증인 C는 비대면 24건, 수수료할인 1,730건으로 정직 5월, ④ 인가공증인 D는 말미용지 1,259장, 비대면 4건으로 정직 4월, ⑤ 인가공증인 E는 비대면 223건, 수수료할인 2,480건 정직 4월, ⑥ 임명공증인 F는 말미용지 58장, 수수료할인 2,464건으로 정직 5월, ⑦ 임명공증인 G는 말미용지 225장, 수수료할인 2,464건으로 정직 5월, ⑧ 인가공증인 H는 수수료할인 1,951건으로 정직 1월, ⑨ 인가공증인 I는 비대면 5,385건, 수수료할인 1,052건으로 정직 7월, ⑩ 인가공증인 J는 서명대필·비대면 2,039건으로 정직 1년, ⑪ 인가공증인 K는 말미용지 1,370장, 수수료할인 13,444건으로 정직 6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여신금융기관 등을 말한다(제2조 제2호 ㉗~㉙목). 지침 제2조 제2호 ㉗부터 ㉙에 해당되는 사람이 금전대부계약의 채권자인 경우에는 이자 유무를 불문하고 지침이 적용된다. 그러나 ㉙에 해당하는 사람이 금전대부계약의 채권자인 경우에는 이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침이 적용된다. 그리고 이 지침에서 말하는 ‘금전대부계약’이라 함은 소비대차계약, 대출계약, 어음할인계약, 준소비대차계약 등 명칭을 불문하고 금전의 교부 및 이에 따른 원리금의 상환을 약정하는 계약과 그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무의 변제계약을 포함한다(제4조 본문). 지침 제2조 제2호 ㉗목 내지 ㉙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촉탁하는 약속어음공정증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침 제4조의 적용대상이 된다. 다만, 촉탁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이 대부계약이 아니라는 증빙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침 제4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2) 공증인의 촉탁인수거절 의무

채무자의 강제집행수락 의사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채무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공증인의 면전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제3조). 채무자 의사 확인 절차를 강화한 제4조²⁴⁾에 따르면, 공증인은 대부업자 등이 계약 및 집행수락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대부업자 등의 상대방 즉, 채무자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촉탁을 거절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증인은 제4조의 사유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그 뜻을 말하고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여야 한다(제5조). 채권자 등이 채무자를 대리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대리하는 것은 허용된다.

24) 지침 제4조는 다음과 같다.

“공증인은 대부업자 등의 금전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채무에 관한 집행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가 위 계약 및 집행수락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대부업자 등의 상대방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증서 작성 촉탁을 거절하여야 한다.

1. 대부업자 등
2. 대부업자 등의 직원 또는 대출모집인(대가를 약정하고 위 계약의 성립을 알선 또는 중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이 대부업자 등의 상대방의 대리인 선임에 관하여 추천 기타 이와 유사한 관여를 한 경우 그 대리인
4. 자력 없이 수수료를 받고 업으로 집행증서 작성의 촉탁을 대리하는 사람”

다. 촉탁인수거절 관련 주요 쟁점

(1) 쌍방대리 등 제한 관련 국내외 참고 입법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은 ‘대부업자는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연체이자율을 그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대부업자가 공정증서로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채무자 본인이 직접 공증사무소에 출석해야 한다.²⁵⁾

통상적인 소송절차에서 쌍방대리 등의 제한과 관련하여 명시적이고 일반적인 금지 규정은 없고, 변호사법 제31조가 ‘변호사는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일반소송절차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해대립관계에 있으므로 일방이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1인이 원고·피고 쌍방을 대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²⁶⁾ 1990년 신설된 민사소송법 제385조는 ‘당사자는 제소전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실상 쌍방대리를 금지하였는데, 이 규정은 통상의 소송사건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것이다.²⁷⁾

국내외 일부 입법례는 공증절차에서 쌍방대리 등을 명문으로 제한하고 있다. 2013. 11. 29. 개정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인도에 관한 집행증서 작성 촉탁 시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어느 한 대리인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고, 일본 대금업법 제20조는 ‘대금업자는 대부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등으로부터 당해 채무자 등이 집행증서의 작성을 공증인에게 촉탁할 것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서면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되고(1항), 대부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등이 집행증서의 작성을 공증인에게 촉탁할 것을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당해 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추천 기타 이와 유사한 관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2항)

25) 다만, 공정증서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도 가능하다.

26)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6판), 박영사(2011. 2.), 175쪽.

27) 이시윤, 앞의 책, 175쪽.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자기계약 · 쌍방대리에 의한 집행증서의 효력

채권자 등이 채무자를 대리하거나 제3자가 쌍방을 대리하여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하고, 강제집행수탁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집행증서가 유효한지 문제된다. 자기계약 · 쌍방대리 금지 법리가 촉탁행위, 강제집행수탁 의사표시 등에 적용된다면 그 법리에 반하는 촉탁 행위나 강제집행수탁 의사표시는 무권대리가 되고, 그에 기한 집행증서는 무효로서 집행권원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²⁸⁾ 과거 판례는 쌍방대리에 의한 촉탁도 유효하다고 보았고,²⁹⁾ 현(現) 공증 실무도 본인 허락이 있는 경우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³⁰⁾ 일본 판례 중에도 그 유효성을 긍정한 것이 있다.³¹⁾ 그러나 촉탁 그 자체는 별론으로 하고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 대립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리하거나 채권자의 대리인이 채무자도 대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종래 제소전화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피신청인의 대리인을 선임한 후 그 대리인과 제소전화해를 하는 것이 허용되었고, 판례도 이를 긍정했지만,³²⁾ 1990년 개정 민사소송법 제355조[현(現) 제385조 제2항]는 제소전화해를 위하여 대리인 선임을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게 하여(제2항) 사실상 쌍방대리를 금지하였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의 법리는 집행증서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앞서 본 1975년 대법원 판결과 소화(昭和)

28)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803 판결은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때에는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29) 대법원 1975. 5. 13. 선고 72다1183 판결.

30) 대한공증인협회, 공증실무(개정판), 2013. 5., 92쪽.

31) 일본 최고재판소 소화(昭和) 26. 6. 1. 판결은 “집행약관을 붙이는 것을 수락하는 행위는 소송행위이므로 이에 대하여 당연히 민법 제108조(우리 민법 제124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법의(法意)는 이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본건의 경우 집행약관을 포함한 계약조항은 이미 당사자 사이에 검토가 되었고, 공정증서 작성의 대리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 이외에 새롭게 어떤 계약조항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상고인의 위임에 의하여 상고인이 피상고인을 위한 대리인을 선임하고 그 대리인과의 사이에 본건 집행약관부 공정증서를 작성하더라도 민법 제108조의 법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32)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7853 판결.

26년의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은 유효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집행수락 약관이 이미 당사자 사이에 약정되어 있고 그 약정대로 공증인에게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할 뿐 별도의 새로운 약정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지만, 강제집행 수락 약관에 관한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집행증서에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집행인낙 의사표시가 공증인에게 명확히 표시되어야만 하므로 강제집행 수락 약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증인에 대한 집행인락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리하거나 동일인이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적 근거 외에도 1990년 이전 제소전화해의 폐해 즉, 채권자 또는 채권자측 사람이 채무자를 대리함으로써 채무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의 제소전화해가 성립되는 문제가 집행증서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요컨대 개정 공증인법 제56조의3 제2항과 같은 명문 규정은 없더라도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은 집행증서에 대해서도 유추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³³⁾

(3) 지침 형식에 의한 촉탁인수거절의무 부과 타당성

자기계약·쌍방대리에 의한 집행증서가 무효라면 공증인은 그 촉탁을 거절해야 한다(법 제25조). 그런데 그 촉탁이 유효하다는 입장에 선다면, 과연 법무부 지침 형식으로 일정 유형의 촉탁에 대한 거절의무를 공증인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³⁴⁾

33) 장재형, “하자 있는 공증에 대한 민사 책임의 귀속”, 인권과정의(Vol 422), 2011. 12., 125~126쪽; 장재형, “공증 불신 원인의 실증적 분석 및 신뢰확보 방안”, 2012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2013. 3.), 58 쪽은 ‘집행수락의 의사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단독적 의사표시의 소송행위로서 이를 상대방인 채권자나 채권자의 대리인이 대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소송법상 무효이다. 이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불가능하고 더욱이 이를 채무이행의 하나로 볼 수 없다. 이에 관하여 명문 규정을 두어 기존의 오래된 대법원 판례를 배척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일본 대심원 소화(昭和) 15. 7. 20. 판결은 집행인락행위는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에서는 당사자 상대방의 위임을 받아서 임의로 계약조항을 결정하고 집행약관을 부가하는 권한을 가지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은 본래부터 허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러한 대리행위는 무효라고 판시한 적이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자기계약·쌍방대리 형태의 촉탁을 무효로 보고 있지 아니하다. 집행증서 작성사무지침은 자기계약·쌍방대리 형태의 촉탁에 따라 작성된 집행증서도 일단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일부 유형의 촉탁에 대해서만 공증인의 거절의무를 부과하였을 뿐이다.

34) 지침은 법무부의 공증감독권에 근거를 두고 있는 내부지시를 조문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침 제정 과정에서 일부 공증인은 촉탁인수의무(법 제4조)가 있는 공증인에게 촉탁인수 거절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개정법 제56조의3과 같은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을 감독하고(법 제78조), 그 감독권에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적절하게 직무를 취급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포함한다(법 제79조 제1호). 한편, 공증은 국가사무이고 공증인은 지방검찰청 소속의 공무원으로서(법 제2조, 제10조) 법무부장관의 직무상 명령을 따라야 하고, 그 직무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법 제82조 제1항 제2호).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종래 실무는 집단공증이 만연되고 이로 인한 수수료 할인, 비대면공증, 말미용지 비치 등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았으며, 채무자의 의사 확인절차가 형해화되어 집행증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와 같이 공증 분야의 오래된 부조리를 근절하고 공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감독권자인 법무부장관이 일정 유형의 촉탁에 대한 인수거절의무를 공증인에게 부과함에 있어 반드시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다.

III. 공증 신뢰회복을 위한 향후과제

1. 법인의사록 인증사무의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2012년 전국 365곳 공증사무소의 법인의사록 인증 건수는 총 40만 2,000건이고, 그 중 7만 8,000건(20%)을 상위 5곳 사무소가 처리하였다. 상위 5곳의 1일 평균 건수는 65건으로 전국 사무소 평균 4.6건의 14배에 달하여 공증인별 실적에 상당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집단공증에 의한 법인의사록 인증의 경우 다수 법인의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법무사가 법인의 요구에 따라 의사록을 작성한 후 그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생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일괄 대리촉탁하고 있다. 2012년 상위 30개 공증사무소는 1일 평균 10건에서 최대 166건의 법인의사록을 인증하였다. 인증 1건 당 소요시간을 최소 30분으로 가정하면 공증인 1명의 1일(8시간) 처리건수는 16건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상위 30개

공증사무소 대부분은 법무사 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집단대리촉탁을 받아 법인의사록을 인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집단공증의 경우 대리인 1인이 수십 ~ 수백 건의 인증을 일괄 촉탁하므로 기한 내 인증을 완료하려면 비대면공증 등 공증인범위반이 불가피하고, 공증인이 적법절차를 강조하면 법무사들의 기피대상이 되기 때문에 집단공증을 거부하기도 곤란하다. 법무사가 수십 ~ 수백 건을 특정 공증인에게 일괄 대리촉탁하므로 법무사와 공증인 사이에 유착관계가 형성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인증서류를 택배로 주고받고, 촉탁대리인의 서명 대필, 비대면 인증, 수수료 할인 등 각종 비위행위로 이어지기도 한다.

공증인은 법인의사록을 인증함에 있어 해당 결의 절차·내용의 법령위반 등 하자 여부(법 제66조의2 제4항, 제59조, 제25조), 해당 결의 절차·내용에 관한 의사록 기재의 진실성 및 의사록의 진정성립(법 제66조의2 제2항)을 확인해야 한다. 즉 법인의사록 인증은 일반 사서증서 인증과 달리 의사록의 진실성도 확인해야 한다. 그 확인 방법에 관하여 법 제66조의2 제2항, 제3항은 참석인증 방식³⁵⁾과 청문인증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대부분 청문인증 방식이 활용된다. 청문인증의 경우 해당 의결에 참석한 자 중 찬성 의사를 표시한 정족수 이상의 사람 또는 그 대리인³⁶⁾이 촉탁인이 되어 공증인에게 직접 진술해야 하고(법 제66조의2 제3항, 서식규칙 제29조 제2항, 별지 제37호 서식),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그 촉탁인 명의 진술서를 촉탁서에 첨부해야 한다(서식규칙 제29조 제2항, 별지 제38호 서식). 법무사 또는 법무사 직원 등이 대리촉탁하는 경우에도 역시 촉탁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고, 이러한 확인절차를 소홀히 하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다(법 제88조).³⁷⁾ 그러나 청문인증에 관한 공증 실무는 결의 절차·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법무사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이 인증을 대리촉탁하면서 의사록의 진실성에 대한 진술까지도 대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술서도 촉탁인 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로 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허점을 기회로 주주 등의 동의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마치 그러한 결의가 있는 것처럼 법무사에 의해 법인의사록이 작성되고, 해당 결의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는 법무사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 등이 촉탁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수십 ~ 수백 건의 인증을 일

35) 참석인증은 공증인이 의결 장소에 직접 참석하여 결의 절차·내용을 검사하는 것이다.

36) 이때의 대리인은 의결권 행사 대리인을 의미한다.

37) 이와 달리 의사록 진정성립 자체는 촉탁대리인을 통해 확인해도 된다(법 제66조의2 제3항 후단).

팔 대리촉탁하고 있다. 이러한 법인의사록 인증의 집단촉탁으로 인해 청문인증의 본질적 절차는 사실상 거의 형해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³⁸⁾

‘서면에 의한 결의’와 관련된 문제도 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상법 제363조 제5항). 소규모회사의 주주총회 개최 비용과 번거로움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2009. 5.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고,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동조 제6항, 제7항). 이사 등은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본점·지점에 비치해야 하고(동법 제373조, 제396조 제1항),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동법 제635조 제1항 제9호, 제24호). 그러면 서면결의 시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는가? 만약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고, 그 의사록이 등기할 사항에 관한 것이라면 법인 등기서류로 첨부하기 전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상법 등기법 제79조 제2항,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이와 관련하여 현(現) 등기실무는 현실적으로 주주총회가 개최되지 않았으므로 주주총회의 의사록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전제하에, 등기신청시 의사록이 제출되지 않더라도 서면결의에 관한 주주 전원의 동의서, 결의요건을 충족하는 주주의 서면결의서가 첨부서류로 제출되면 등기신청을 수리하는 경우가 많다.³⁹⁾ 그러나 상법 및 상업등기법 소관부처인 법무부의 유권해석은 이와 다르다. 즉 법무부는 ① 서면결의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점(상법 제363조 제6항, 제7항, 제373조), ② 서면결의는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것이지만, 총회로 결의할 사항과 같이 중요한 것은 주주·이해관계인에게 공시되어야 하고, 안전에 대한 결정 과정 등은 객관적 증거에 의해 명확히 기록될 필요가 있는 점, ③ 법무부가 서면결의 제도를 도입할 당시 의사록 작성 의무의 면제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던 점 등을

38) 다만, 참석인증의 촉탁인이 누구인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청문인증의 경우 의결에 찬성한 자와 의사록 작성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예컨대, 상법 제373조 제2항에 의하면 주주총회 의사록은 의장과 출석의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의사록 작성자도 촉탁인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무상 혼선이 있다. 그리고 보다 실질적인 문제는 청문인증의 경우 법인의사록 기재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족수 이상의 자의 진술을 들어야 하는데, 주주의 수가 많은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을 인증할 때마다 그 정족수 이상의 자가 공증사무소에 출석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이러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박상진, “현행 공증서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3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2013. 11.), 56~61쪽; 대한공증인협회, 앞의 책, 300쪽; 신정식, 앞의 책, 456쪽 등 참조.

39) 법원행정처, 상업등기실무Ⅱ(2011년), 75쪽.

근거로 서면결의시에도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⁴⁰⁾⁴¹⁾ 이에 대한 학계의 입장은 서면결의에도 의사록에 관한 상법 제373조가 준용되므로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는 견해,⁴²⁾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와 관련하여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할 경우에 사원총회 의사록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⁴³⁾ 등이 있다.

법무부가 상법 시행 직후인 2010. 6. 17.자 질의회신에서 서면결의시 의사록을 작성해야 된다고 유권해석을 한 후 그 입장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면 2009. 5. 서면결의제도를 도입할 당시에는 현(現) 등기실무 관행의 형성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 같다. 의사록 작성제도는 어떤 회의체의 의사결정 과정과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작성되는 것이고, 서면결의제도는 소규모 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에 따른 비용과 번거로움을 덜기 위한 제도이므로 양 제도는 그 취지가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이 투명하지 아니한 소규모 회사에서 오히려 의사록을 더욱 제대로 작성할 필요성도 있다. 그리고 서면결의에 따른 법인등기시 의사록 제출 없이도 등기를 해주는 지금의 등기실무 관행으로 인해 서면결의제도가 주주총회 의사록 인증절차의 우회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법 규정에 따라 서면결의시에도 의사록을 작성해야 할 것이다.

나. 개선방안

당연한 조치로서 법인의사록 인증 건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공증사무소 위주로 수수료 불법할인이나 비대면 인증에 대한 감사와 징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집행증서 작성 및 번역문 인증 분야의 집단공증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2013. 10. 1.부터 공증사무지침이 시행되었음에도 법인의사록 인증사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련 지침이 시

40) 법무부, “서면에 의한 결의시 의사록 작성 요부 등”(2010. 6. 17.자 질의회신), 변호사·공증 관련 질의회답 사례집(2012. 9.), 13쪽.

41) 법무부는 서면결의시 의사록을 작성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상업등기법 제7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아래 밑줄친 부분)하는 취지의 상업등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도 있으나(2011. 12. 28. 제18대 국회 제출), 임기만으로 폐기되었다. [상업등기법 제79조 제2항]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363조 제5항에 따른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42) 이철송, 회사법강의(2012년), 554쪽.

43) 노일석, 주석상법(2003년, 회사법5), 299쪽.

행되지 않은 것을 기화로 실적 상위의 공증사무소는 여전히 집단공증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3년에도 5곳 이상의 공증사무소가 매일 평균 50건 이상의 비정상적 인증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이를 말해준다. 따라서 법무부는 수시 특별감사 기준에 의한 특별감사 실시는 물론, 법인의사록 인증사무 개선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법인의사록 인증사무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무상 다수인 청문인증의 촉탁인 진술 절차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청문인증이 대리촉탁된 경우에도 공증인법의 규정에 맞게 촉탁인이 직접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여 의사록의 진실 여부에 관해 진술하도록 하고, 촉탁인들 명의로 된 진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번거롭다면 청문인증이 아닌 참석인증을 활용하면 될 것이다.⁴⁴⁾ 법무사 직원 또는 아르바이트생이 촉탁인을 대신하여 의사록의 진실 여부에 관해 진술하고 있는 현(現) 인증 실무 관행은 공증인법에 위반되고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서면결의 후 법인등기를 신청할 때 인증된 의사록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현(現) 등기실무도 상법 규정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간에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의사록의 진정성립은 물론이고 그 내용의 진실성까지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공증인의 인증 절차가 정상화되고 적극 활용된다면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등기실무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기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인가공증인제도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2013. 12. 31. 현재 인가공증인 정원은 190곳이고 현원은 298곳(법무법인 267곳,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31곳)이며, 공증담당변호사로 지정된 숫자는 1,304명이다. 임명

44) 다만, 청문인증의 경우 촉탁인 전원이 출석하는 것이 곤란하다면 법률개정 전 과도기적 조치로 그 중 1인이 대표자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허용하되, 진술서에 촉탁인들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을 하도록 하고 그에 상응하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공증인은 2009년 33명, 2010년 38명, 2011년 42명, 2012년 48명, 2013년 5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인가공증인은 2009년 371곳까지 증가하였다가 2010년 359곳, 2011년 337곳, 2012년 316곳, 2013년 298곳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종래 공증인법에 따른 임명공증인과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합동법률사무소⁴⁵⁾로 이원화되어 있다가, 2009. 2. 6. 공증인법 개정 당시 공증 관련 규정이 모두 공증인법으로 통합되면서⁴⁶⁾ 공증인가제(제15조의2), 공증담당변호사 지정제(제15조의3)가 도입되었다. 공증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그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증담당변호사를 공증인으로 본다(제15조의5).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은 임명공증인과 동일하므로(제15조의4) 10년 이상 법조경력⁴⁷⁾이 있어야 하고 정년(80세)의 제한이 있다. 공증인법 제15조의3에 의하면 인가공증인은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해야 하고, 공증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그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증담당변호사를 공증인으로 본다(제15조의5). 공증담당변호사 수의 상한에 관한 규정이 없어 2013. 12. 31. 현재 298곳의 인가공증인이 지정한 공증담당변호사는 1,304명에 달한다. 그리고 공증담당변호사는 공증사무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됨에도⁴⁷⁾⁴⁸⁾ 공증 사무 이외에 일반 변호사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가공증인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우선 겸업공증의 본질적 문제를 들 수 있다. 법무부 공증 감사결과에 따르면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 중 상당수는 법정 출석 등 일반 변호사 업무를 처리하다가 보조자가 작성한 서류에 서명만 하는 등 공증을 극히 부수적인 업무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증과 일반 변호사업무를 겸업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이 든다. 의뢰인과 변호사는 사법(私法)상 위임관계이고 촉탁인과 공증인은 공법(公法)상 관계이므로 변호사 겸업 공증인 제도는 전혀 성질이 다른 2개의 직업을 병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

45) 합동법률사무소는 2005년 변호사법 개정으로 폐지되었으나, 부칙에 따라 기존 사무소의 존속이 허용되었다.

46) 우리나라 공증제도의 연혁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전병서, “바람직한 공증인 수급방안 연구”, 2007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2008. 2.), 5~23쪽 참조.

47) 인가공증인 및 공증담당변호사 지정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도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작성한 공증서류를 공문서로 보았다. 예컨대, 대법원 1977. 8. 23. 선고 74도271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064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3844 판결 등 참조.

48) 공증담당변호사도 공증작용이라는 국가권능을 수행하는 준공무원의 지위라는 견해로 장재형, “공증 불신원인의 실증적 분석 및 신뢰확보 방안”, 2012년도 법무부 연구용역과제보고서(2013. 3.), 30쪽 참조.

증인의 당사자에 대한 중립의무를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⁴⁹⁾ 공증인의 중립적 신분을 고려할 때 사인(私人)의 일반 대리가 주된 업무인 변호사에게 공증까지 겸무시키는 것은 공증 활성화 또는 수입증대에는 기여하겠지만 분명 기형적 결합이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⁵⁰⁾

임명공증인과 비교했을 때 규제·수입의 불균형 또한 가볍지 않은 문제이다. 2009. 2. 6. 공증인법 개정 이후에도 임명공증인의 직무방식은 전업공증인이라는 특성상 인가공증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특히 변호사업무 등 다른 사무가 허용되는⁵¹⁾ 공증담당변호사와 달리 임명공증인은 공증 사무 외의 다른 사무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에서(법 제6조)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임명공증인과 달리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는 다른 변호사업무를 겸할 수 있어 경제적 수입이 더 나은 편이다. 더구나 2013. 12. 31. 현재 59명에 불과한 임명공증인에 비해 공증담당변호사는 무려 1,304명에 달하고, 그 공증담당변호사들이 대다수의 공증 사건을 점유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임명공증인의 공증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임명공증인 정원 86명에 비해 현원이 59명에 불과한 주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공증업무에 대한 충실성·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점도 인가공증인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09. 2. 6. 공증인법을 개정하여 공증인가제, 공증담당변호사 지정제를 도입한 이유는 공증업무를 부수적인 업무로 취급하는 현상을 타파하고 공증의 전문성·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실무는 대다수의 공증담당변호사가 변호사업무를 주로 처리하면서 남는 시간에 교대로 공증 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공증담당변호사 숫자에 상한이 없는 것을 기화로 공증 건수에 비해 공증담당변호사를 과다하게 지정하고 그 중 1인이 무작위로 접수되는 공증사건 서류에 서명만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되고 있다. 2013. 7. 31. 기준으로 공증담당변호사 수가 많은 22개 인가공증인 중 17개 인가공증인의 경우 공증담당변호사 1인이 매일

49) 전병서, “공증제 저변확대를 위한 공증제도 선진화 연구”, 2010년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출보고서 (2010. 7.), 5쪽 ; 박길현, “공증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박사학위논문, 강릉원주대학교 (2013. 8.), 119쪽.

50) 전병서, 앞의 보고서(“바람직한 공증인 수급방안 연구”), 64~65쪽 ; 법무법인 공증인가제를 채택한 우리와 달리 독일은 변호사 개인에게 겸업공증을 허용하고 있다. 대한공증인협회, 앞의 책, 8쪽.

51)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공증담당변호사의 겸업이 허용되고 있는 실무관행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다.

처리하는 공증 건수가 3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1일 3건 미만을 처리하는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전문성·충실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공증담당변호사 지정 수 상위 10개 사무소 현황]

	지정 수(명)	공증실적(확정일자 제외)		
		13년(상)	매월(1인)	매일(1인)
1	42	680	3	0.2
2	32	1,100	6	0.3
3	23	923	7	0.4
4	20	8,640	72	3.7
5	19	1,135	10	0.5
6	18	7,400	68	3.4
7	16	3,076	32	1.6
8	15	1,859	21	1
9	15	6,475	72	3.6
10	13	1,701	22	1.1

그런데 이처럼 공증을 부수업무로 취급하면서도 집단공증 형태로 다수의 공증사무를 처리하고 있어 비대면공증 등 각종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13년 상반기 316곳 인가공증인 중 68곳이 1일 평균 25건 이상 공증(확정일자 제외)을 처리하였는데, 9곳은 6개월 실적이 9,000건을 초과하였으며, 다수 인가공증인과 공증담당변호사가 비대면공증 등으로 매년 징계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2013년 상반기 공증실적 상위 인가공증인]

	건 수				
	총계	공정증서	정관	의사록	사서증서
1	21,967	21,710	4	41	212
2	21,892	1,589	2	218	20,083
3	16,302	5,301	3	3,003	7,995
4	15,615	161	0	1,183	14,271
5	12,515	12,038	0	5	472
6	10,904	6,744	1	327	3,832
7	10,524	549	26	8,769	1,180
8	9,834	48	0	22	9,764
9	9,602	360	41	7,083	2,118
10	8,838	64	0	32	8,742

[공증인별 징계 현황]

	2010	2011	2012	2013	합계
임명공증인	6	7	8	13	34
인가공증인	44	72	62	39	217
공증담당변호사	72	109	83	49	313
합 계	122	188	153	101	564

나. 개선방안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가 전체 공증사건의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겸업공증제도를 전격 폐지하는 것은 공증수요자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야기하므로 전격 폐지하는 것보다는 점진적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증전담변호사제도 실시 등 업무처리 방식의 개선을 통해 일단 공증업무의 전문성·충실성을 확보하고, 점차 임명공증인을 증원하고 지역적으로 안배하는 등 전업공증인 체제로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하겠다.⁵²⁾⁵³⁾

52) 법무부는 2003. 12. 8. 임명공증인 체제로 전환하는 취지의 변호사법 개정법률안(의안번호 2989)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국회 심의 중 제16대 국회 임기만으로 자동 폐기되었다.

실무는 공증담당변호사가 일반 변호사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당연한 관행처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 공증인법상 공증담당변호사는 과연 일반 변호사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가? 2009. 2. 6. 공증인법 및 변호사법 개정 이전에 구(舊) 변호사법(법률 제 9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49조, 제50조에 따르면 법무법인은 자동적으로 공증권한이 부여되었고, 이에 따라 법무법인 소속 구성원 변호사는 누구나 공증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2009. 2. 6. 개정 당시 모두 삭제되었다. 대신 2009. 2. 6. 개정 공증인법은 공증 업무의 충실성·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증인가제, 공증담당변호사 지정제도를 도입하였다. 법 제15조의4는 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을 기본적으로 임명공증인의 자격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제15조의5는 공증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그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증담당변호사를 공증인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으며, 법 제6조에 의하면 임명공증인은 다른 공무나 변호사업무 등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현(現) 공증인법상 공증담당변호사는 임명공증인과 마찬가지로 공증 사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다. 공증담당변호사가 공증 이외의 다른 업무를 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 성격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해석은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해 명백할 뿐만 아니라 2009. 2. 6. 개정 공증인법 이전부터 공증담당변호사를 공증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으로 보았던 관례의 입장 과도 부합하고, 공증 업무의 충실성·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증인법 개정 취지에도 맞는 것이다. 위와 같은 해석에 따르면 법령개정 없이도 공증전담변호사제도는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다만, 공증전담변호사제도의 전면 실시는 비용·인력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중간 조치로서 일정 기준 이상의 공증 실적이 있는 인가공증인부터 우선 공증전담변호사를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53) 공증담당변호사가 본인이 송무 등 변호사업무를 겸업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실과 단점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공증전담변호사제가 바람직하나, 공증전담변호사제의 필요성이 결코 변호사공증제도 즉, 인가공증인제의 축소나 폐지의 방향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견해로, 장재형, 앞의 논문(“공증 불신원인의 실증적 분석 및 신뢰확보 방안”), 72쪽 참조.

IV. 결 론

근대적 의미의 공증제도가 도입된 지 1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증인들이 민간영역의 심판관으로서 예방사법기능을 충실히 담당해 왔다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는 어렵지만, 과연 우리 공증제도가 최고 수준의 역량과 신뢰를 보여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1970년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제도를 도입하고 1982년 법무법인(공증권한 자동부여) 제도를 도입하여 공증 활성화를 꾀하면서도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조치는 미흡하였던 것에 기인한다. 다행히 2009. 2. 6. 공증인법이 대폭 손질되면서 공증체계가 일원화되고 공증인의 자격요건이 강화되는 등 공증 신뢰 제고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고, 2013. 5. 28. 공증인법 일부 개정으로 집행증서 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2013. 6. ~ 10. 비록 지침 형태이기는 하나 공증실무를 획기적으로 개혁하는 조치가 있었다. 향후 공증 신뢰를 더욱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증 영역을 확대해 감으로써 예방사법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은 점차 높아질 것이다. 법무부는 물론 대한공증인협회, 각 공증인 등 공증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